

[사 건 명] 핵심 2019 - 14

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

청구인 : ○○○○

피청구인 : ○○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은 2018. 11. 12.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이 ○○군수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(이하 ‘이 사건 정보’라 한다)를 ◇◇◇◇◇◇시청에 접수하였고, ◇◇◇◇◇◇시청에서는 2018. 11. 12. ■■■■■교육청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였으며, ■■■■■교육청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 처리하였다.

나.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■■■■■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, 2019. 1. 3. 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관되었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,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있기에 정보공개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니, 청구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Ⅲ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1. 관계법령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3조,

2. 판 단

가.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1)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(이하 ‘정보보유기관’이라 한다)이 ○○학교임을 알면서도, ◇◇◇◇◇◇시청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송을 요청하였다.
- 2)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■■■■■교육청으로 이송되었으나, 이 정보보유기관인 ○○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, 잘못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를 하였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함에 대한 판단

- 1) 「행정심판법」 제2조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,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

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“처분”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.

- 2)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○○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며,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.

IV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